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일, 서미화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2024.11.1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9.15.)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9.17.)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미화의원)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임.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중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종전의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3급 중복은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를 뜻하므로 종전의 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현됨에도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종전의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수급에 있어서의 중증장애인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연광석)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의 개념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같게 함으로써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은 종전 장애등급 기준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 해당하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종전 3

급 단일장애인까지 포함되어 2024년 8월 말 기준 수급권자가 약 50만 명에서 약 89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다만,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하위 규정의 표현을 전제로 조문화 하면서 수급권자를 ‘장애의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하여 법문상 중복된 표현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종전 3급 단일장애인은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는 수급권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1조 418억원(국비 6,980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조 4,724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한 바, 수급권자 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와 기존 장애수당과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논의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백종헌)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